

# 고성군율대동공단지오·폐수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682
----------	-----

제출년월일 : 2001. 3. 14  
제출자 : 고성군수

## 1. 개정이유

행정규제사무 정비계획과 관련하여 사업자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사무정비와 일부 미비한 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 2. 주요골자

- 가. 조례명칭 및 관할처리업체 상호변경(안 제1조 및 제2조)
- 나. 사업자(장)의 변소를 수세식으로 하는 의무규정 삭제 (안제11조.)

## 3. 참고사항

- 가. 행정규제완화 및 자치법규정비
- 나. 입법예고 : 불필요

## 4. 본문 : 붙임과 같음

## 고성군조례 제 호

### 고성군율대농공단지오·폐수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중개정조례안

고성군율대농공단지오·폐수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고성군율대농공단지오,폐수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를 “고성군율대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고성군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장”을 “고성군율대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장”으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유성산업(주)”를 “고성식육센터(주)”로 한다.

**제8조제4호** 중 “유효기간100mm이하”를 “유효간격10mm이하”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배수설비 설치공사”를 “배수설비 설치공사 및 관리”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건축법에 의한”를 “건설산업 기본법에의한”로 한다.

**제11조**를 삭제한다.

**제13조제4호 및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T-N : 총질소

5. T-P : 총인

**제33조제2항**을 삭제한다.

**별지 제1호내지제6호서식내용**중 “고성군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를 “고성군율대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중 “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규정제10조”를 “고성군율대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제12조”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명 : <u>고성군율대농공단지공동오,폐수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u>	제명 : <u>고성군율대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u>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질환경보전법 제25조 내지 제27조·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9조 및 환경비용부담법 제15조 내지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u>고성군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장</u> (이하 “처리장”이라 한다)설치 및 운영의 비용부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 <u>고성군율대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장</u> ----- -----.
제2조(정의) (생략) 1. (생략) 2. 사업자(장)라 함은 농공단지내에 입주하여 폐수 또는 생활오수를 배출하는 사업자(장) 및 고성읍 율대리226번지내 위치한 유성산업(주)를 말한다(이하 “사업자”라한다)	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 <u>고성식육센터(주)</u> -----
제8조(배수설비의구조) (생략) 1~3. (생략) 4. 배수관 입구에는 <u>유효기간100mm</u> 이하의 스크린을 설치하여야 하며, 유지류를 배출하는 유출구에는 유지차단 장치를, 다량의 토사를 배출하는 유출구에는 적당한 크기의 모래받이를 각각 설치하여야 한다. 5~6. (생략)	제8조(배수설비의구조) (현행과같음) 1~3. (현행과 같음) 4.----- <u>유효간격10mm</u> ----- ----- ----- ----- -----. 5~6.(현행과 같음)

##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9조(배수설비의 설치공사) ①<u>배수설비 설치공사는</u> 당해사업자(장)의 부담으로 하며 공사시 파손되는 도로등 시설물은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p> <p>②제1항의 공사시공은 <u>건축법에</u> 의한 상·하수도 설비공사 면허를 가진자라야 한다.</p> <p>제11조(<u>수세식변소의 설치</u>) 사업자(장)은 <u>사업장의 변소를 수세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u></p>	<p>제9조(배수설비의 설치공사) ①<u>배수설비 설치공사 및 관리 공사</u> -----</p> <p>-----</p> <p>-----</p> <p>②----- <u>건설산업기본법에</u> 의한 -----</p> <p>-----</p> <p>-----</p> <p>제11조. &lt;삭제&gt;</p>
<p>제13조(<u>처리장의 처리대상오염물질</u>) (생략) 1~3. (생략) &lt;신설&gt;</p>	<p>제13조(<u>처리장의 처리대상 오염물질</u>) (현행과 같음) 1~3.(현행과 같음) 4. T-N : 총질소 5. T-P : 총인</p>
<p>제33조(<u>배수중지처분및기타</u>) ①(생략) 1~2. (생략). ②<u>제1항 규정외에 위사항을 위반하여 기준치 이상으로 폐수를 방류시에는 수질환경보전법에</u> 의하여 의법조치 할수 있다.</p>	<p>제33조(<u>배수중지처분및기타</u>) ①(현행과같음) 1~2. (현행과 같음) ② &lt;삭제&gt;</p>
<p>별지제1호서식 내지 제6호서식 내용중고성군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p> <p>별지제7호서식 내용중 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규정제10조.</p>	<p>별지제1호서식 내지 제6호서식 내용중고성군율대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p> <p>별지제7호서식 내용중 고성군율대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제12조.</p>

의안번호	제 683호	의 결 사 항	수 정 가 결
의결년월일	2001. 3. 31. ( 제 85 회 )		

## 제2차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반영에관한의견제시의견

제출자	고성군수
제출년월일	2001. 3. 17.

# 고성군의회의견서

제 목	마동지구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견
【 의견 】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본 지구는 고성군관내 1,400ha의 천수답에 농업용수의 안정적 공급과 인근 안정공단의 공업용수 확보 등 항구적인 한해 대책을 위한 오랜 고성군민의 숙원사업으로</li><li>○ 매립시 담수호의 수질오염에 대한 문제가 일부 염려되기는 하나 2001년에 완공 예정으로 시공중인 고성읍 하수종말처리장이 완공 되어 가동하게 되면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이라 사료되며, 또한 농업용수의 안정적 공급은 물론 자연적으로 형성되는 갈대밭 조성에 의해 담수호의 수질을 간접적으로 정화하게 되어 개선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li><li>○ 현존하는 갈대군락지를 계속하여 보전하여 조수보호구역으로 지정 관리하므로써 자연적으로 야생 동·식물의 서식지로 형성되어 철새들의 낙원으로 발전될 수도 있을 것이며,</li><li>○ 또한 담수호 제방을 도로로 활용함으로써 10~20분정도 우회하여야 하는 주민불편 민원해소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며,</li><li>○ 장기적인 안목에서 고성군의 발전은 물론 환경친화적 남해안 관광지로 새롭게 탈바꿈 할 것으로 기대되어 마동지구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안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제시함.</li></ul>	

고성군의회의장 정재근

# 고성군의회의견서

제 목	봉동지구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 의견 】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본 지구는 충무공의 당항포해전 승전지로 당항포관광지와 연계하여 고성군에서 장기적 프로젝트 사업으로 경정장 개발의 타당성 용역 조사를 완료하여 개발코자 하는 지역으로서 수심이 얕고 연평균 수온이 14℃ 이상으로 사계절 경정경기를 할 수 있는 최적의 입지적 조건을 갖춘 곳으로서 경정훈련 및 경기장으로 적합하여 국민체육 진흥공단과 경정훈련원 유치 협의중에 있다고 할지라도</li><li>○ 선진 일본경정장의 경우를 보면 중앙정부나 우리나라의 도단위의 순수 예산으로 경정장을 설치하였을 뿐만 아니라 만약 경정장 훈련 장소로 운영하려면 지방재정의 어려움과 갖추어지지 않은 주위의 여건으로 흑자 운영된다고 보장할 수 없으며,</li><li>○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시행하는 방법보다 점·사용 허가를 득하여 부유식 방법으로도 시설을 할 수도 있을 것이며, 경정장설치 운영 사업비가 방대하여 지방비로는 재정적 부담이 크다고 할 것이므로 봉동지구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반영안은 반대의견을 제시함.</li></ul>	

고성군의회의장 정재근

# 고성군의회의견서

제 목	고성만지구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견
【 의견 】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본 지구는 경남개발연구원에서 고성군장기개발계획에 고성만지구를 매립하여 고성을 배후주거단지 및 산업물류단지로 개발하는 계획안을 수용하여 추진하는 사업이기는 하나</li><li>○ 고성만에 형성되어 있는 어장에 손실이 클뿐 아니라 자연경관이 수려하여 개발훼손 보다는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정서 및 환경 생태적으로 얻는 이득이 크다고 할 것이며,</li><li>○ 또한, 산업용지 및 주거시설 등의 기반시설 사업비가 과다하게 소요되고 수심이 낮아 항만으로서 개발이 어렵다고 보아지며,</li><li>○ 마산, 진주, 사천, 통영 등의 배후도시로 개발한다고 하더라도 개발 사업비가 방대하여 경제적 가치가 높다고 할 수 없고 산업용지 및 도시 주거용지 개발로서의 필요성이 부족하다 할 것이므로 고성만지구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반영안은 반대의견을 제시함.</li></ul>	

고성군의회의장 정재근